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관 선정 방식 및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도록 전문관 선발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¹⁾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총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부산광역시에서는 공무원의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월에는 추가지정 등의 사유로 등 64개 직위를 지정 추진하여 그 중 35개 직위에 35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여 2월 1일부로 임용하였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상반기 전문관 공모 안내」(2016. 1. 21)에서 별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한다고 부산광역시청 내부에 공고하였다.

그리하여 공모 결과 타 전문직위와 달리 ○○조사관 전문관의 경우 1개 직위에 10명의 공무원이 지원하였으며, ○○조사관은 전문관 수당·경력평정 가점 부여·해외연수 등 교육상의 우대 등 전문관 공통의 혜택 이외에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의 조력청구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며, 무엇보다도 부산광역시의 경우 구·군 소속 보건·의료기술·간호 등 해당 직류의 공무원이 ○○조사관 전문관으로 선발될 시, 부산광역시 본청으로 전입하여 ○○○○과에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관 공모 시 타 기관의 전문관 공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천서’라는 형식을 도입하여, ○○조사관 전문관의 경우 ○○○○국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한 지원자들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²⁾

또한 자체 계획에 따라 ‘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위원회의

2) ○○○○국장의 추천서를 받은 2명이 임용 추천되어, 이 중 한 명이 최종 선발됨

이전 단계에서 지원자 8명을 배제하고 ○○○○국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2명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담당업무 소관 실국에 사전 심사를 일임하였고, ○○○○국은 ○○조사관 전문관 지원자 10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이 중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8인의 지원자들에 대해 ‘자격부족’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 탈락시켰으며³⁾, 이와 관련하여 ○○○○국의 심사 자료, 의견서 및 심사위원 서명 등 증빙 자료도 미비되어 있다.

이후 위 관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을 최종 심의·의결 하였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열거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는 서면심의 후 2016. 2. 1. 35개 직위 35명의 전문관을 임용하였다.⁴⁾

결과적으로 부산광역시는 모집과정에서부터 ‘추천서’라는 임의의 형식을 통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선발심사도 담당 실국의 의견만을 취합해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서면으로 심사한 결과, 동 ○○조사관 전문관 임용절차는 ○○○○국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3) 지원서 검토 결과 사전 탈락자 8인 중 6인의 경우 ○○조사관 전문관의 필수요건을 갖추

4) 인사위원회는 ○○○○국의 검토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제시나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

[주의] 전문관 지정과 선발을 할 경우에는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추천서 제출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보장하며, 내·외부에 공고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